

서 면 답 변 서

질의의원	신교선 의원	소 속	평창군의회
답변과	환경복지과	일자	질의: 1999년 12월 8일 답변: 1999년 12월 9일
회의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결특위		

【질의요지】

- 장애인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 및 규정제출

【답변요지】

- 장애인 ·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현황 및 조례 · 운영규정(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조성현황

- 장애인복지기금조성 :

- 목표액 1999~2003년까지 500백만원 현조성액 1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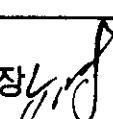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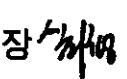
- 노인복지기금조성 :

- 목표액 1996~2005년 1,000백만원 현조성액 382백만원

붙임 : 1.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조례사본 1부
2. 운영계획 1부. 끝.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계획

계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	부정자	기재관	100%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 

평 창 군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계획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 단체를 육성하고,
장애인들의 종합복지대책 마련 및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기금조성기간 : 1998년 ~ 2002년 (5년간)
 - 기금조성목표 : 5억 (군비 출연)
 - 기금설치및운영방법 :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추진
 - 기금예치 : 5년간 군금고에 최고 이율로 예치
 - 기금예상수입 : 625,300천원
 - 기금출연: 500,000천원
 - 이자수입: 125,300천원
 - 기금사용 : 기금조성 5년후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추진
사용 - 년 사용 가능액 75,000천원

□ 현재까지 추진실적

-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98. 1.19
 -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시행 규칙(안) 심의 상정증임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재활·자립 의지 고취
 - 장애인 단체의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유도
 - 장애인들간의 정보교환으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 마련

□ 평창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공포번호 : 평창군 조례 제 1531 호

-공포일 : 1998. 1. 19

-공포방법 : 군보 게제

-조례내용

.목 적 :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기금조성: 평창군의 출연금

.기금운용관리: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기금사용: 1.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2.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3.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교육과 장애인교실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기타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 10인 이내

-위원장 : 부군수

-부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위원 : 장애인 단체장(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장: 박진수)
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 대표 2인(추천의뢰 계획)

장애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있는 자(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장: 심승로, 이경진의원, 우강호의원)

□ 향후추진 계획

○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위원회 위촉 및 개최

- 일 시 : 98. 5월중
- 장 소 : 평창군청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운영위원
- 주요안건
 - .운영 위원회 구성
 - .’98년 ~ 2002년 까지 기금규모 협의 및 예산확보
 - .효과적인 기금증식 방안 강구
 - .2002년 이후 기금 사용계획 수립

○ 공인 신조 신청 : ’98년 5월중 평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제12조에 근거

- 이 유 : 평창군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출납
- 글씨체. 규격 : 한글 전서체. 2cm정방형
- 공 인 명 : 평창군 장애인 복지기금 출납 명령관

○ 장애인복지기금 확보 방안

- 매년 100,000천원씩 5년간 군비 출연 (목표: ₩500,000,000)
- ’98 출연금예산액 : 100,000천원
- 예산조치: ’98년 제 1 회 추경 예산 반영

●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1995 · 5 · 3]
[조례 제1459호]

개정 1996 · 7 · 12 조례 제1499호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1998 · 9 · 25 조례 제1549호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평창군의 출연금

2.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되며 지방재정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 설치)로 납입 관리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중식 사업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총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평창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환경복지과장, 군의회 의원2인,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제 7 편 환경복지 제4장 사회복지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7·12, 98·9·25>

⑤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환경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6·7·12, 98·9·25>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6·7·12>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6 · 1 · 29]
[규칙 제7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3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정기회 등)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

서는 다음 년도의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